한-일 활동가 온라인 미팅: 유산유도제와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슈들 日韓活動家によるオンラインミーティング: 中絶薬、リプロダクティブヘルス・ライツに関する話題

한국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현황과 우리의 요구 韓国の妊娠中絶をめぐる非犯罪化の現状と 私たちの要求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堕胎罪」 憲法不合致の決定以降

한국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현황 韓国の妊娠中絶をめぐる非犯罪化の現状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憲法 第27章 堕胎罪

제269조(낙태)

-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憲法 第27章 堕胎罪

第269条(堕胎)

- ①妊娠した女性が薬物やその他の方法で堕胎をした場合、1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万ウォン(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②妊娠した女性の嘱託又は承諾を得て堕胎させた者も、第1項の刑と同様とする。
- ③第2項の罪を犯し、妊娠した女性に傷害を負わせた場合、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死亡に至らしめた場合は7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第270条(医師などの堕胎、同意のない堕胎)

- ①医師、韓医師、助産師、薬剤師または薬種商(医薬品販売業者)が妊娠した女性の嘱託または承諾を得て堕胎を行った場合は、2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②妊娠した女性の嘱託又は承諾なく堕胎を行った者は、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③第1項又は第2項の罪を犯し、妊娠した女性に傷害を負わせた場合、5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死亡に至らしめた場合は10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④前3項の場合、7年以下の資格停止を併科する。

모자보건법 제14조 母子保健法第14条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당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母子保健法第14条

第14条 (人工妊娠中絶手術の許容の限界)

- ① 医師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のみ、本人と配偶者(事実婚関係にある者も含む。以下同じ。)の同意を得て人工妊娠中絶手術をすることができる。
- 1. 本人または配偶者が大統領令の定める優生学的または遺伝学的精神障がいや身体的疾患がある場合
- 2. 本人または配偶者が大統領令の定める伝染性疾患を持っている場合
- 3. 強姦または準強姦により妊娠した場合
- 4. 法律上婚姻できない血族または親戚間で妊娠した場合
- 5. 保健医学的な理由で妊娠の持続が母体の健康を深刻に害している場合や害する恐れがある場合
- ②第1項の場合、配偶者の死亡、失踪、行方不明、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同意を得ることが出来ないときは、本人の同意のみで手術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③第1項の場合、本人又は配偶者が心身障害により意思表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親権者若しくは後見人の同意により、親権者若しくは後見人がいない場合は扶養義務のある者の同意によってそれぞれその同意となすことが出来る。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의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의견 4명, 위헌 의견 3명, 합헌 의견 2명) 2020. 12. 31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

刑法第27章「堕胎罪」第269条第1項と第270条第1項のうち、「医師」に関する部分について憲法の不合致が決定 (裁判官9名のうち不合致4名、違憲3名、合憲2名)。 2020年12月31日までに改正されない場合、法的効力を喪失



2020. 12. 31까지 국회에 제출된 모든 개정안이 논의되거나 통과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 현재까지 정부, 국회의원, 국민청원 등을 통해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과 같은 새로운 입법안도 발의되었으나 모두 계류 중

2020年12月31日までに国会に提出されたすべての改正案は、議論されることも、通過することもなかった。 そのため2021年1月1日から法的効力を喪失した現在に至るまで、政府と国会議員、国民による請願などを通して、 刑法、母子保健法、勤労基準法、医療法、国民健康保険法など10の改正案が発議された。 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保障する基本法 (案)といったような新しい立法案も発議されたが、 今のところこれといった進展が見られない状況である。

우리의 요구 私たちの要求

비범죄화 이후의 과제들

무엇이 공백인가

입법 공백??

- -법 제정이 되지 않아서 허용 기준이 부재한 게 문제 => X
-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전히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이 없는 것이 문제
- ->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외 정치적 책임의 공백

형법-모자보건법이 아닌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과 같은
통합적, 유기적 권리 보장 프레임의
새로운 법이 필요

── 실질적인 권리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의 공백

이동 시설, 병원 내 시설 등 물리적 접근 가능성 부족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부재로 인한 경제적 접근가능성 (시설 수 부족, 지역 간 편차) -편견없이 진료를 제공할 훈련된 의료•전문인력과 -연령, 성별, 언어능력, 교육수준,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 숙련된 의료서비스 제공자 부족 체성, 그리고 인터섹스 지위 등에 따른 정보 접근성 제약 -유산유도제 미승인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Availability Accessibility 수용가능성 성별, 연령, 장애, 성적 다양성, 생애주기별 숙련된 의료인력,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Acceptability Quality 필요사항에 따른 맞춤형 시설, 재화, 정보, 이용가능한 의약품 및 기구의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부족으로 수용가능성 미비 최신의, 안전한 의료행위/약물 이용 등이 보장되지 않음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감염인, 홈리스,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非犯罪化以降の課題

どこが空白なのか

立法の空白?? 法制定がなされていないため、許 容の基準がしっかりと定められてい ないのが問題 => X

- 堕胎罪が犯罪でなくなった後も、依然として権利と接近性を保障してくれる法が存在していないのが問題
- → 権利に対する認識の不在と 政治的責任の空白

刑法-母子保健法ではなく、 「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 保障する基本法」といったような統 合的かつ有機的な権利保障のた めの法律が必要

---- 実質的な権利と接近性を保障する政策とインフラの空白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妊娠中絶施術を行うことのできる医療機関の不足

(施設数の不足、地域間の偏り)

― 偏見なく診療してくれる医療の専門的な 人材と、熟練した医療サービス提供者の不足

- 中絶薬の未承認

- 青少年、障がいのある人々、移住民、難民、感染症患者、ホームレス、LGBTといったマイノリティーが利用することのできる医療機関や移動施設、病院内施設などにアクセスしづらいという物理的な問題

- 健康保険、医療費支援が足りないため、経済的なアクセスが制限されているという問題

ー年齢、性別、言語能力、教育水準、障がい、性的 指向、性別に関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そしてインター セックス、社会的地位などによって情報へのアクセスが 阻害される問題

性別、年齢、障がい、性の多様性、ライフサイクルごとに必要な事項に応じたオーダーメード型の施設や資源の不足、情報、サービスの提供が不足していることにより、受け入れの条件が限られているという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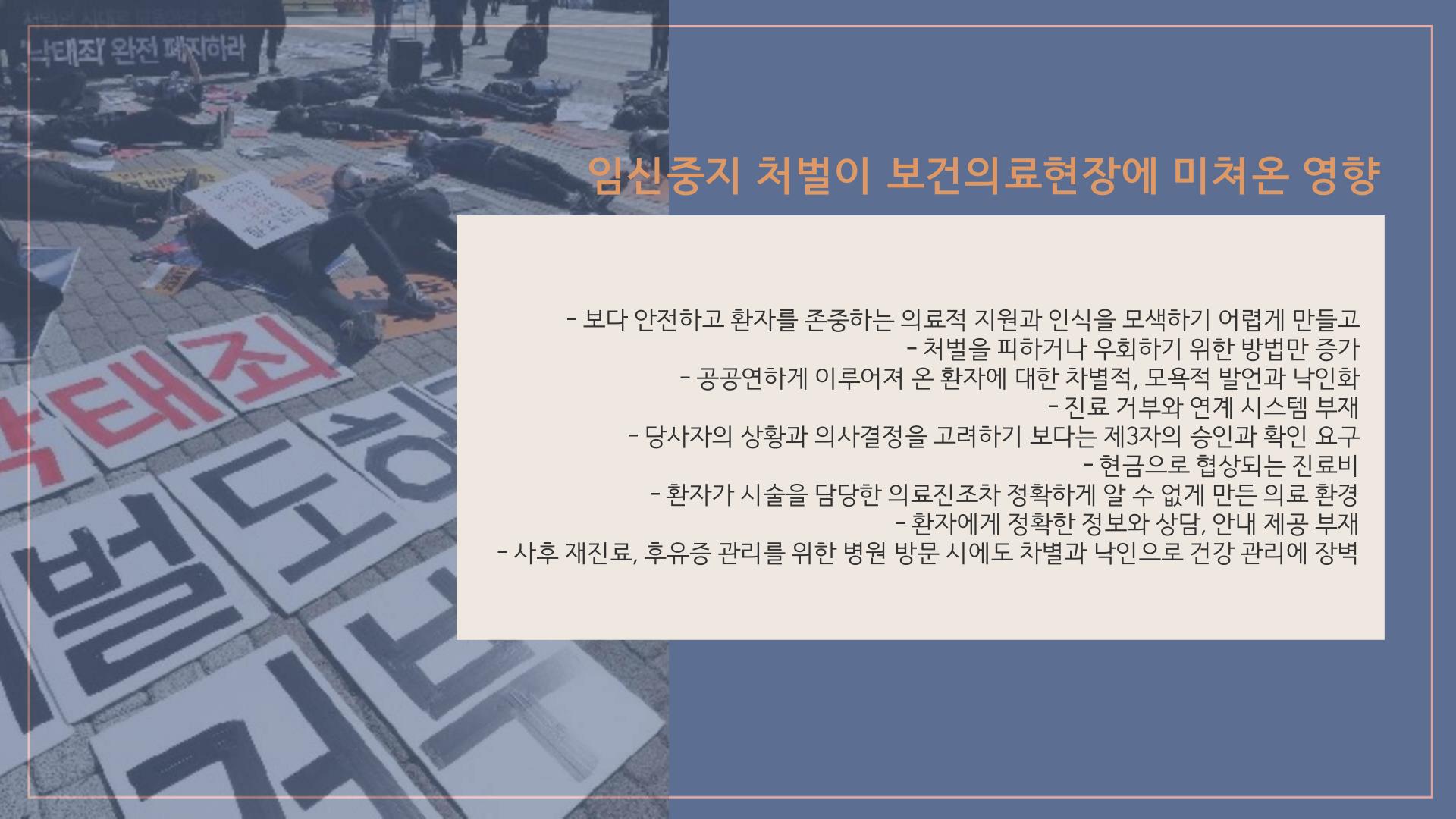
수용가능성 Accept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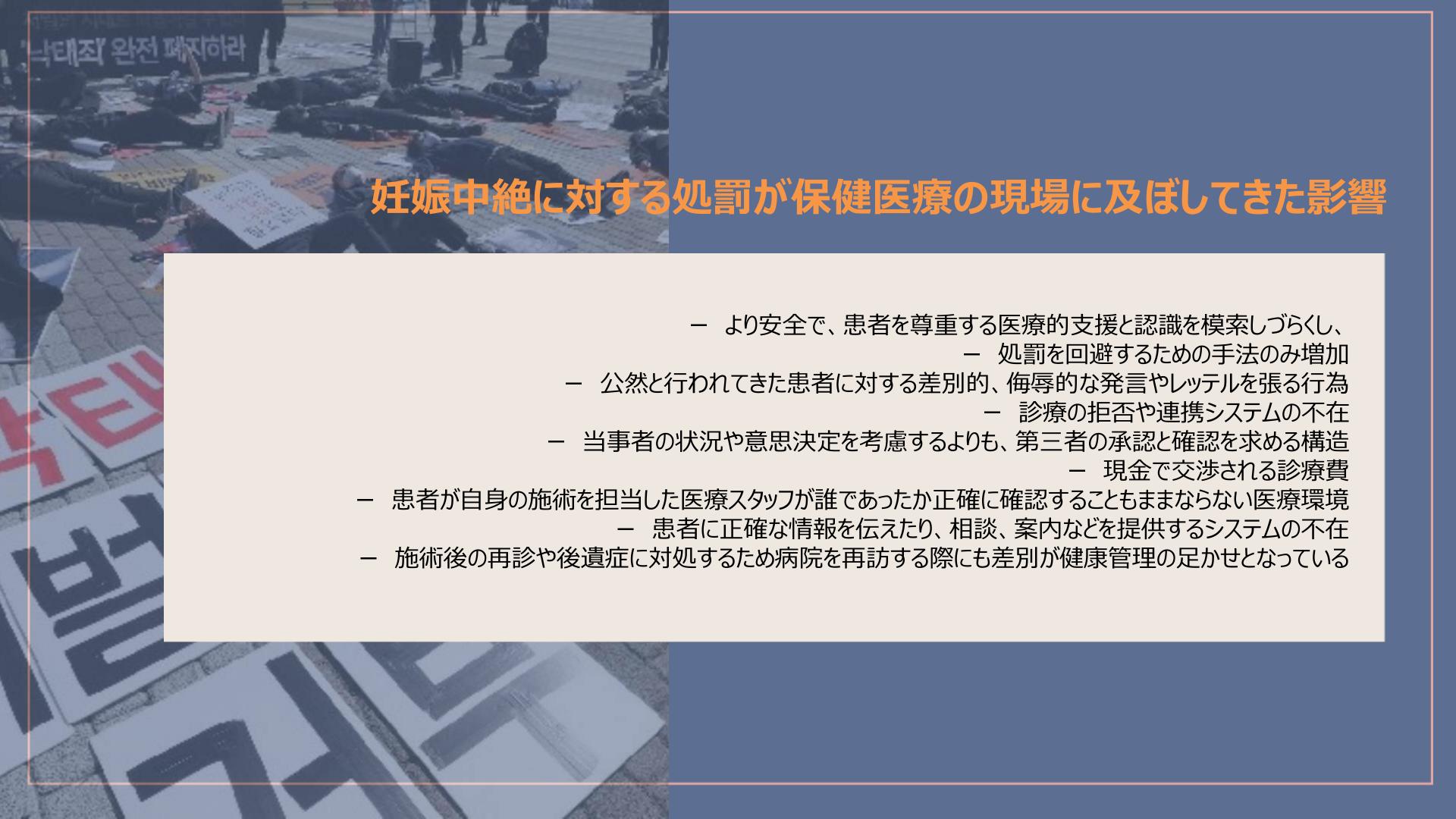
접근가능성

Accessibility

a Quality

> 熟練した医療従事者によって、 または科学的に立証され、利用することのできる医薬品や器具が不足しているため、最新の安全な医療行為/薬物の利用などが保障されていないという問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로

「みんなのための堕胎罪廃止共同行動」から 「みんなの安全な妊娠中絶のための権利保障ネットワーク」へ

우리의 요구 私たちの要求

とななし とれられ かと

요구사항

安全な妊娠中絶の ための権利保障 ネットワーク 要求事項

- ☑ 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 적용
- ☑ 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 ☑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 ☑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 ☑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 ☑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마련

우리의 요구 私たちの要求

安全な妊娠中絶の ための権利保障ネットワーク 要求事項

- ☑ 妊娠中絶に対する健康保険の全面適用
- 中絶薬の導入と接近性の拡大
- ▼ 安全な妊娠中絶のための保険医療システム構築
- ▼ 総合的な情報提供システムの構築
- ✓ 妊娠中絶と関連した権利保障のための教育実施
- ☑ 社会的な差別をなくし、包括的な性教育を実施
- ▼ 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ヘルス・ライツを保障する基本法の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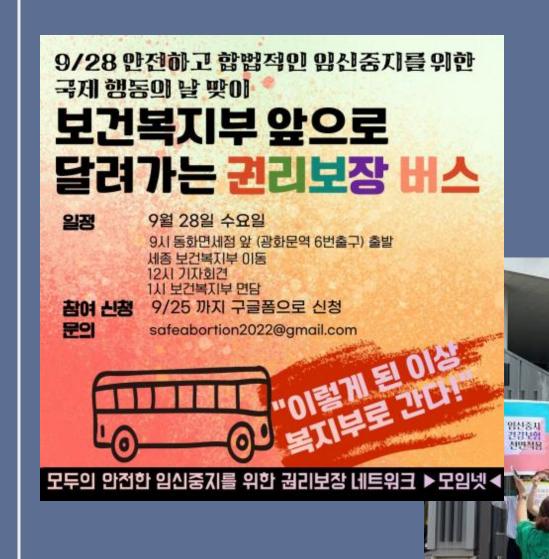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私たちはこれ以上秘密にしたくない。国家は妊娠中絶を健康権として保障せよ!」





임신중지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낙인의 철폐 / 접근성 확대 /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로서의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妊娠中絶に対する不平等と差別、レッテルの撤廃/接近性(アクセス)の拡大/健康権と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保障のための要求として、中絶薬の導入を促進

우리의 요구 私たちの要求



http://decide.org.nz

방향바꾸기 方向の転換

국가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国家の目的と計画に基づいた

인구통제, 처벌, 선별적 허용과 지원이 아닌 人口統制、処罰、 選別的許容や支援ではない、



<u>권리보장의원칙을 중심으로</u> 権利保障の原則を中心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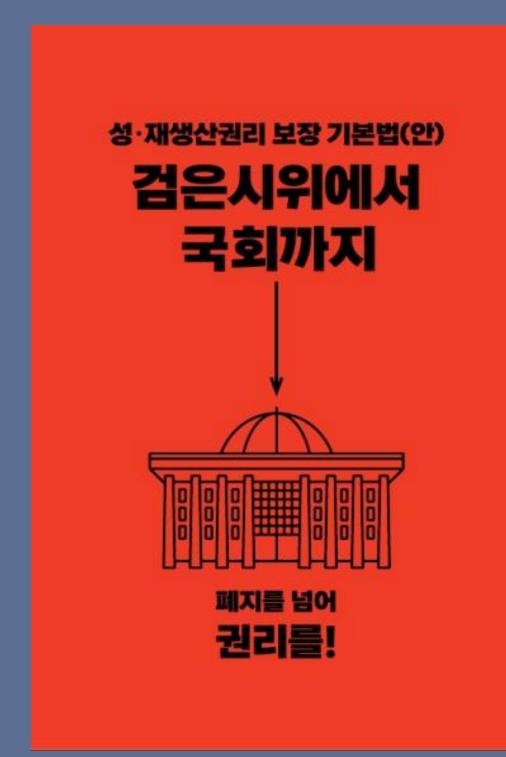
<u>計増, 강요, 폭력, 낙인의 금지</u> 差別、強要、暴力、レッテルを張る行為 を禁止



교차성과 통합성의 적용 交差性と統合性の適用

경제적/지리적/사회문화적 불평등과 장벽을 없애고 자기 결정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자원과 접근성을 보장 経済的/地理的/社会文化的な不平等と障壁を取り除き、 自己決定ができるよう、十分な資源と接近性を保障する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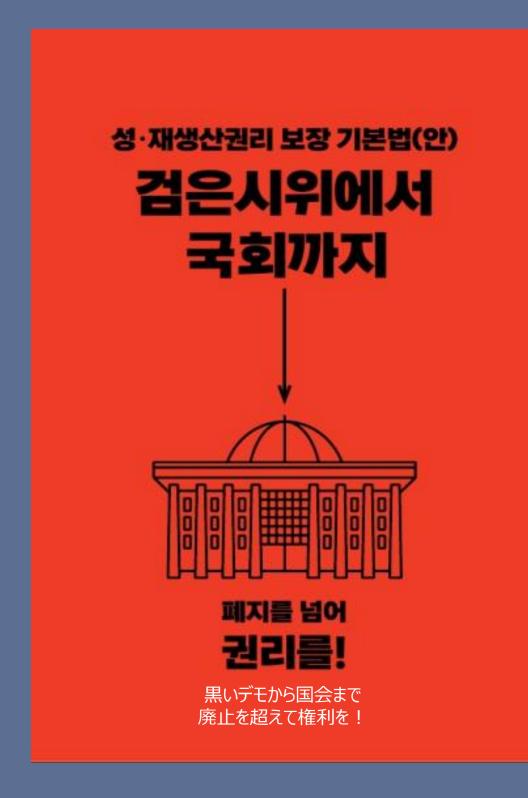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안



제1장 총칙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장 월경	제5장 피임	제6장 성별확정 및 성별정정
제7장	제8장	제9장
보조생식기술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
제10장	제11장	제12장
상담과 상담기관	통역 등 지원인력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
제13장	제14장	제15장
일터에서의 성·재생산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	보호 · 복지시설 등에서의
권리의 보장	권리의 보장	성 · 재생산권리의 보장

* 참고 : 셰어에서 제안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의 조문 구성

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保障する基本法 に関する提案



1		
第1章 総則	第2章	第3章
	ジェンダーと再生産に関する権利	総合計画と推進計画の
		樹立・試行など
		المراجد المرابع المراب
第4章 月経	第5章 避妊	第6章
7514 7314	7704 227	性別の確定と性別の訂正
		エカリック #産人こと エカリック 1 エ
第7章	第8章	第9章
補助生殖技術	妊娠・出産と中絶	包括的な性教育
11023227232113	72.77 7.12 - 1.40	O,H., 0.1=3.713
第10章	第11章	第12章
相談と相談機関	通訳など支援をしてくれる人材	医療従事者および医療機関など
	~	джист дчого джижи
第13章	第14章	第15章
職場におけるジェンダー・再生産	教育機関におけるジェンダー・再	保護・福祉施設などにおけるジェ
と関連した権利の保障	生産と関連した権利の保障	ンダー・再生産と関連した権利の
このほした唯小の体件	上注に対注した推列の体件	
		保障

※参考:シェアが提案する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保障する基本法(案)の条文構成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의 방향

- -국가의 인구정책과 경제발전을 목적에 둔 법과 제도를 개인의 권리와 건강 보장을 목적에 둔 법과 정책으로 전환
- -출산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때만, 성관계는 출산을 예비할 때만, 개인의 성적 정체성은 결혼 제도 하에 인정될 수 있는 이성 간 성관계를 전제로 할 때만 인정되는 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삶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전환
-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으로 명시
-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
-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누구나 '차별·강요·폭력·낙인 없이 성적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체계를 구축
- -모성보호, 월경, 임신·출산, 임신중지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생애주기와 노동 조건, 사회적 환경 속에서 포괄적·교차적으로 연계되고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폐지를 넘어 권리를!

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保障する基本法の方向性

- 国の人口政策と経済発展を目的とした法制度を個人の権利と健康保障を目的とした法政策に転換
- 出産は国家の発展に役立つ場合にのみ、性行為は出産を準備する場合にのみ、個人の性的アイデンティティは結婚制度の下認められる異性間の性行為を前提としてのみ認められる社会から、すべての個人が生活に対する自律性を尊重される社会に転換
- これを保障することのできる社会、経済的条件を積極的に構築していくことを国や自治体、関連機関の責任として明示
- ー 平等と差別禁止の原則を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保障する基本原則と して確立
- 「被害を受けない権利」を越えて、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ヘルス・ライツに対する自己決定権と、これを実現するための社会・経済的な条件を保障される権利を確保し、誰もが「差別・強要・暴力・レッテルを張られることなく、性の喜びを教授することのできる権利」を保障する法体系を構築
- 母体の保護、月経、妊娠・出産、妊娠中絶を個別に扱うのではなく、多様な人々のライフサイクルや労働条件、社会環境の中で包括的・交差的に連携し保障を行うシステムを構築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페지를 넘어 권리를!

차별과 낙인 없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국가, 지자체 차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 보건의료, 노동, 교육, 사회복지 등의 전 영역에서 추진 체계와 인프라 구축

형법, 민법,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군형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권리를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조항들을 개정 또는 삭제

지역 간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고 성·재생산 건강에 관한 상담을 차별이나 편견, 낙인 없이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거점 시스템 마련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통합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실태 조사, 모니터링, 관련 보건의료 시설 이용 이동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연계 시스템 구축, 각 보건의료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성과 재생산 건강 증진 방안 연구, 성·재생산 건강 관련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와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 개발, 차별과 낙인 없는 진료와 권리 보장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인 및 매개자 교육, 환자/이용자를 위한 권리 안내

성 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폐지를 넘어 권리를!

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保障する基本法の方向性

国、自治体レベルで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保障する基本計画を樹立、実行

:保健医療、労働、教育、社会福祉など全ての領域で推進体系とインフラを構築

刑法、民法、母子保健法、健康家庭基本法、軍刑法、感染症の予防および管理に関する法律などに関連した権利を制約したり、侵害する条項がある場合は改正または削除

地域間のインフラ格差を縮め、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ヘルス・ライツに関する相談を差別や 偏見なしに受けることのできるオン/オフラインのシステム構築

ジェンダー・再生産、健康に関する権利保障のための保健医療統合連携協力システムを構築

: 実態調査、モニタリング、関連保健医療施設の利用・移動情報の提供などに関する連携システムを構築、それぞれの保健医療の現場で蓄積された経験とデータを基にした成果の再生産、健康増進方案に関する研究、ジェンダー、リプロダクティブヘルス・ライツと関連した保健医療へのアクセス強化と、保健医療の環境改善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作り、差別のない診療と権利の保障に対する認識を高めるための医療従事者および関係者を対象とした教育、患者/利用者を対象とした権利を知らせる活動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폐지를 넘어 권리를!